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30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제220233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91조)	2

I.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제220233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29.

다. 회 부 일 : 2024. 7.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91조(과태료) ① (생략)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u>1의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u>
<u>1의2.</u> (생략)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위반하여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45조의2¹⁾는 2021년 3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발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의 시공행위를 하더라도 감독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거나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조항의 실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행법 제45조의2의 실효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5조의2제1항은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이를 위해 하위법령에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고시)²⁾」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³⁾’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아닌 유사 건설공사 등과 비교한 참고적 성격의 기준이고,

국내·외 환경적·경제적 여건 및 인력·기자재 확보 여부 등 각각의 건설현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적정한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현행법 제45조의2제2항에서는 민간공사가 제외된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3) 2023년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공고 2023-1656호)

개정안과 같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대·내외 경제 여건, 극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체별 규모와 기술력 및 현장 여건 등의 편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민간공사에서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와의 선행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